

제3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4. 3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4년 4월 30일
전문위원 권오숙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4 - 44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4년 4월 15일

라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4일

2.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이 개정(2023. 3. 28.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
- 제1조(목적)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→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항
- 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항 추가
- 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→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 및 제2항

나.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개정(안 별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합의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(2024. 3. 8. ~ 3. 28.) 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○ 상위법인 「지역보건법」이 개정(2023. 3. 28. 시행)됨¹⁾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「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」 등으로 제공받은 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

1)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조 ~ 제3조에서는 「지역보건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 위반사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부과·징수 근거를 정비함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항----- -----.
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·징수 한다.	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-----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---.
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	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-----.

- 안 【별표】 에서는 과태료 부과 관련 개별기준을 정비하였음

현 행		개 정 안							
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		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							
위반사항	근거법령	과태료			과태료				
		1차	2차	3차 이상	1차	2차	3차 이상		
<신설>									
가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1항제1호	100	200	300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1항	1,000	2,000	3,000	
나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1항제2호	100	200	300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2항제1호	100	200	300	
					다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2항제2호	100	200	300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「지역보건법」 이 2023. 3. 28.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위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²⁾에서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파기³⁾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(별표)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2) 「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」: 전국 보건소 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 해당 업무를 효율화하고,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※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

: 보건소 내 보건사업 및 행정업무 등의 자동화, 전자의무기록(EMR) 적용 및 진료 관련 업무 (청구, 검사 등)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, 진료 실적·통계 보고자료 제공, 건강보험 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

- 3)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(정보의 파기):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「사회보장법」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

참 고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· 징수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.

3. 미첨부 사유

-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성 명	보건소 의약과장 장진수 (담당: 의료기술6급 전영민)
연 락 처	02-2600-5952

□ 「지역보건법」

제23조(건강검진 등의 신고) ① 「의료법」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(이하 “건강검진등”이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제29조(동일 명칭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22조(정보의 파기) ① ~ ② (생략)

③ 시 · 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 · 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 <개정 2023. 3. 28.>